

#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4.	28.
개정	2017.	4.	3.
개정	2020.	2.	12.
개정	2020.	11.	10.

## 제1장 총 칙

**제1 조(근거 및 명칭)** 대한카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 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체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

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 할 경우 심판 배정이나 기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5.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연맹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 국제심판 자격취득자로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심판 및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경기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위원으로 지명 받을 수

있다.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2. 국내심판 : 국내심판 자격취득자로서,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 및 지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경기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위원으로 지명 받을 수 있다.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제9호의 사유를 제외한다)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연맹이 정한 절차 및 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및 연맹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된 사람만이 해당 단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심판은 연맹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제공)**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제 4 장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제18조(심판아카데미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체육회 주관 교육은 심판양성교육과 심판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과정의 교육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양성교육은 연맹에 등록된 심판을 대상으로 별표와 같이 7개 영역 14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심판심화교육은 심판양성교육 이수 심판 중 종목 유형별로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10년 이상 활동심판, 종목별 상임심판, 전년도 최다활동 심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각 종목 유형별로 전문강의 및 토론 중심의 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3.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4. 교육 참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⑥ 체육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9조(연맹 교육실시)** ① 연맹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해당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0조(심판평가)** ① 연맹은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연맹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1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연맹은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해당 단체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이 아닌 심판의 수가 부족할 경우 심판배정 시 판정이나 기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심판배정)** ① 연맹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와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연맹은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및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제23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해당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자료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해당 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 제24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연맹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 ② 심판은 해당 단체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심판은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규정’, 연맹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 제25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오심 횟수가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에 따라 심판자격을 강등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다.

- 제26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연맹은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심판매뉴얼)** 연맹은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7 장 심판의 자격

**제28조(자격의 취득)** ① 국내심판은 연맹에서 개최하는 심판강습회를 이수 하고, 자격검정 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도달한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② 3급 국내심판자격 응시 조건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카누연맹 경기인(전문선수, 동호인, 지도자, 임직원)으로 3년 이상 등록하여 활동한 자
2.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일반조종 2급 이상의 면허 소지자
3.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③ 자격검정 검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심판(승급) : 50,000원
2. 2급 심판(승급) : 50,000원
3. 3급 심판 : 100,000원

**제29조(자격취득의 제한)** 지도자 겸 선수로 활동 중인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선수로 출전중인 대회 심판배정에서는 제외한다.

**제30조(승급 및 시기)** ① 국내 심판의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다음 각 호의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카누 스프린트
2. 카누 슬라럼
3. 카누 폴로
4. SUP(Stand Up Paddling)

② 심판 승급의 시기는 [별표2] 종목별 심판 승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회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③ 국제 심판자격 취득응시자 선발 : 대상자 선발은 적절한 시기에 2급 이상 심판자격 취득자 중 응시지원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31조(자격정지 및 취소)** ① 통산 3회의 심판배정을 받고 단, 1회도 심판활동 실적이 없는 자 및 취득 후 만 3년 동안 연속 심판 활동이 없는 자.

② 3년간 심판연수(강습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단, 해외유학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제외함)는 해당분과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고 서면 통보한다. (단, 차기 심판강습회에 참가할 경우 정지된 자격은 유효하도록 한다.)

③ 카누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심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해당 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회장의 결정으로 심판자격을 정지 및 취소시킬 수 있다.

**제32조(자격의 부활)** ①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면 소정의 교육(강습회)을 받은 후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연맹에서 개최하는 심판강습회를 이수 하고, 자격검정 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도달한자에 한하여 3급 자격을 부여한다.

**제33조(권리)** ①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의 심판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

② 국제심판 자격을 위한 시험에 추천 받을 수 있다.

③ 국제심판은 국제대회 주최 측의 요청 시 해외에 파견된다.

④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이며 외부의 압력에 구애받지 않는다.

⑤ 국제, 1급, 2급, 3급 심판자격에 의한 소정의 심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급수별 차등지급 원칙)

**제34조(의무)** ① 심판은 경기규칙을 절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심판은 공명정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심판은 위원장과 해당대회 경기위원회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④ 심판은 소집된 심판회의 및 심판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⑤ 심판은 대회기간 중 임무 수행 시에는 항상 규정된 심판복을 착용하며 단정한 태도와 공경한 언어로 심판에 임하여야 한다.
- ⑥ 심판으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회 2일전까지 불참 사유서를 해당대회 경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심판 강습회)** 심판의 자질과 기량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강습회와 심판자격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강습회를 개최하며, 심판강습회 또는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심판 배정에서 제외한다.

**제36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의 심판자격취득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2016. 3. 21.)**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 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 **부 칙(2016. 4. 28.)**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4. 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20. 2. 1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11. 1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심판자격취득 및 승급 절차는 종전 규정 및 2020년도 심판자격취득과정 개최 계획에 의거하여 자격취득 조건 및 승급의 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교육과정

영역	과목명	최소 배정시간
스포츠의 도덕적 이해	○ 개인 가치와 스포츠	1시간
	○ 심판 활동의 도덕적 탐구	1시간
스포츠 윤리와 통합	○ 스포츠와 윤리	1시간
	○ 스포츠와 사회 통합	1시간
건전한 경기 문화 정착	○ 공정한 경기 운영과 판정	1시간
	○ 배려와 존중	1시간
도덕적 주체로서 심판	○ 심판 활동의 자긍심	1시간
	○ 심판의 책임감	1시간
심판의 멘탈 관리 전략	○ 심판 스트레스와 극복방안	2시간
	○ 심판 심리 기술	2시간
심판 사례연구	○ 심판 활동에서의 오심사례	2시간
	○ 사회 정의와 심판 비리 사례	2시간
심판 실무실습	○ 경기 참관 및 비디오 판독	2시간
	○ 종목별 경기 규칙 및 심판 판정 기준 비교	2시간
총 교육시간		20시간

[별표2]

### 종목별 심판 승급기준

종 목	승 급 기 준	자격요건
스프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 → 1급</li> <li>- 2급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과</li> <li>-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15회 이상 심판수행</li> <li>- 구술시험</li> </ul>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급 → 2급</li> <li>- 3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과</li> <li>-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15회 이상 심판수행</li> </ul>	일반조종 2급 이상의 면허
슬라럼 카누 플로 SUP(Stand Up Padd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 → 1급</li> <li>- 2급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과</li> <li>-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8회 이상 심판수행</li> <li>- 구술시험</li> </ul>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급 → 2급</li> <li>- 3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과</li> <li>-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6회 이상 심판수행</li> </ul>	일반조종 2급 이상의 면허